

제391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30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9)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2)

상정된 안건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10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10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10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0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10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10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10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10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0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0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10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1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1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1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11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1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11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1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11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1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1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11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11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11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11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11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11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1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1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1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11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11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1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11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1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11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1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1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11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11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11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1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11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1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1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11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12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12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12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12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12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1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1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12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12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12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12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1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12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1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1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12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1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12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1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1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12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12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12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12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1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2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12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1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1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12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12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12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12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1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1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2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2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2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3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3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3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3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3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3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3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3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3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3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3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3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3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3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3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3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3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3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3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3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3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3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3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3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13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1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14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14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4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14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4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4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9)	14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4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4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4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4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4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4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4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4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4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4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5)	14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4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4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4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4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4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4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4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9)	14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4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4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4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4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2)	14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4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4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4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4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4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4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4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5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5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5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5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5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방세법 관련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제별로 정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률안은 법률안 간 관련성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 전체를 일괄 상정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전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종합하여 정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밤늦게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의견이 있는 법안은 별도로 또 내일·모레, 이틀 오전만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대표하여 고규창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우철문 수사기획조정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길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논의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경찰청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0시06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7항까지 이상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제별로 검토 및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심사자료 1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조금 빠르게, 쟁점 없는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체계화입니다.

현재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한 연계 정보통신망을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신고 편의와 지방세 행정 접근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두 번째 사항은 5쪽입니다.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과세관청에 2개월 이내에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 청구 가능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통지 지연 여부 및 사유 등과 불복 청구에 관한 내용을 보다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수 위원 이것은 ‘또는’은 아예 ‘이나’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그동안 ‘또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어느 조항……

○이명수 위원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돼요, 인용만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또는’으로 법령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나’로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기로 다 한 거냐고, 다른 법도 다. 이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수 위원 앞으로 전반적으로 ‘또는’이라는 용어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또는’ 해야 확실하게 딱 되는데 ‘이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이 저거하는 면도 있는데……

법제처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또는’이라는 용어를 ‘이나’로 바꾸는 걸로 했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뭐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법제처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저도 그것 한 가지 여쭙볼게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나’하고 ‘또는’에 차이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 앞에 어떠한 또는 어떠한 하게 되면 앞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법 해석할 때 대등한, 대등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A 또는 B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A이나 B 그러면 A이나 B는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선택적으로……

○**김민철 위원** 그런데 A 또는 B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까지는 ‘또는’도 대등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법체계상의 자구를 ‘이나’로 일원화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또는’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A 또는 B는 별도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A 또는 B도 같은 대등한 관계로 행안부에서는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 부분 좀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A이나 B 이런다면 맞는 법체계 자구인데……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어쨌든 ‘또는’이라는 경우도, A 또는 B라고 이 때도 해석상 A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혹은 B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이렇게…… A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어쨌든 B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이런 의미이고 이번에 문구에 ‘이나’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로 어쨌든 해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이나’하고 ‘또는’ 그 구분 잘하셔야 돼요, 행안부에서. 그 판단을 한번 잘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A하고 B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A 또는 B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A이나 B이나 이것은 같은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전혀 다른 그리고 또는 B라는 부분이라는 게 포함이 된다는 걸로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명수 위원** 조그만 저거지만 이것도 한번 해봐요. ‘경우’하고 ‘경우에는’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러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열거할 때는 경우가 맞아요. 그다음에 본문 문장에 들어갈 때는 ‘경우에는’ 했는데 어떤 때는 ‘경우’ 하고 ‘경우에는’, 작은 얘기 같지만 이 글자 한 자 한 자가 우

리 공직자나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콤마가 됐는가 별거 다 따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것을 뭔가 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때는 ‘경우’고 어떤 때는 ‘경우에는’이나. 이게 지금 너무 한마디로 나열식으로 돼 있고 너무 풀어져 있어요. 법령 용어가 압축되고 때로는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 그냥 이게 무슨 수필식으로 써 있는 식으로 하는 건 조금 문장을 법문으로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법제처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다음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 기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현행 일부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있고, 김형동 의원안은 현행 가산금 기준일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액 경정 및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동일한 취지의 개정이나 정부안은 관련 내용을 국세기본법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형동 의원안은 현행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법률에 내용을 두고 정리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이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산일이나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관계되는 부분인데 저의 취지는 법에 두는 것이 보다 재산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고 법에 둘 때하고 시행령에 둘 때하고 차관께서 생각하는 차이점이나 편

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법에 담는 게 맞고요. 기산일이 라든가 부과·납부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은 대체로 시행령에 담아서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즉시 알려 드릴 수 있고 또 고지해 드릴 수 있어서 국세체계도 그렇고 저희도 시행령에 두고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러면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액 기산일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령으로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앞에서 보고받으신 것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7쪽 고충민원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규정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경정청구나 불복 제기 없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는 2020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환급의 경우에까지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의 경정청구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다른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우려가 있으며 경정청구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거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9쪽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자료 요청의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 이용을 지금까지는 공동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공 요청이 가능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안부장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전자납부·전자송달을 위해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주체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정되어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향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직접 연계 또는 일괄 자료 요청·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을 자료 제출 요청의 주체로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

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3쪽,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시 압수물건 인계 대상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고발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검사로 한정된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방세 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외의 지방세 범칙사건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양되었으므로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5쪽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특별시세와 구세의 귀속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과세하는 재산세 중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60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는 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서울시 내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

치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조제2항은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는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도록 정하여 이는 당초 재산세 공동과세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 완화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재정력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당초 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차관님, 이것 서울시 자치구 의견 한번 수렴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치구 의견을 들어 봤더니 찬성하는 자치구가 17개고 반대가 7개고 보류하는 자치구가 1개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명료한 답변을 주질 않았습시다.

○이해식 위원 재산세 공동과세 처음 도입할 때부터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강남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은 반대를 엄청나게 세게 했지요.

시세분을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원래 공동과세 도입의 취지가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건데 지금 공동과세 도입을 할 때도 50%까지 바로 도입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는 40%, 2009년도에는 45% 그리고 2010년도에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왔고요. 현재까지 50%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지금 2020년 현재 4.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실제 재산세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시물레이션을 해 봤더니 시세분을 60%로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현재 4.7배인데 3.7배로 축소가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배 이상 늘었다고 보는데 60%가 되면 3.7배 그리고 65%가 되면 3.2배, 70%로 하더라도 2.8배, 3배 가까운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세율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조금 더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한 차례 정도 보류를 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실무자 수준의 응답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몇몇 구청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을 면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한 차례 시간을 주시면 저도 조사를 하고 행안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세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 또 수도권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그리고 어쨌든 국세를 투입해서 강남 쪽에 모든 도로나 지하철이나 다 놓으면서 땅값이 올라서 재산세 취득이 올라가는 문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의논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내일 정도…… 이걸 모아 가지고 할 때 할 거니까요.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을 하루 이틀 사이에 들어 보시고 이해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 항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립대학병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대학병원 등의 지방세 납세의무 적용 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간주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될 과세 대상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 등은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훨씬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되어 국립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고 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1년에 50% 경감 중인데 일몰기한 도래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전환국립대학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국가 등도 민간과 경쟁하는 우체국 택배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단체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며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교육·연구 등 대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1쪽입니다.

시행시기의 조정에 관한 부칙 개정 내용입니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일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법률인 16854호 및 17768호의 일부 규정에 관한 시행시기를 현행 2022년 2월 3일에서 2023년 1월 25일 또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당시에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일정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로 유예했던 일부 규정에 대해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지연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다시 한번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당초

시행일로 정하였던 2022년 2월 3일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개통시기는 2023년 1월 2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통시기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가산세·가산금 통합 등과 관련된 내용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변경된 일정을 고려하면 시행일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세조합은 당초 예정한 2022년에 설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 없는 지방세조합의 관련 규정은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에서 2023년 1월 25일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쪽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관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서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종시법을 지방세기본법상의 지방세관계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법에서는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지금 심사 대상이므로 이 정부 제출안이 의결되면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수정하고 의결할 것을 한번 더…… 이상 소위자료 1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상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은 법률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끝낸 후에 종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법안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의무화하고 제한 요구 기준액을 상향하는 반면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허사업 제한을 개정안과 같이 기속행위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면 체납 지방세 징수의 편의성과 능률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빈번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위헌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을 1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줄어들게 되고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1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읽어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자체에 두더라도 이러한 체납 건수나 체납행위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현재도 지자체와 계약한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받아서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계약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통상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재량조항으로 두고 다른 관련된 국세징수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제재금 부과 검토도 전부 다 재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법에 담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라는 추진사항이 발표가 되어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으나 지방세징수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감치는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사법상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간접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103조에 체납 처분 면탈죄를 두어 체납 처분을 면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감치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감치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효과를 입증한 후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안부 의견이 지금 기존 입장과 좀 달라졌네요, 감치제도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법안을 준비하고 행안부 의견을 물었을 때는 당시에는 행안부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국세에도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중 검토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2019년도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나올 때 상당히 강한 대책으로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또 경찰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청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국세의 경우도……

○이형석 위원 경찰청의 어려움은 어떤 걸 이야기하던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경찰이 감치를 직접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고 경찰청안은 감치를 세무공무원이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지방세를 못 낸 분들을, 지역주민을 지방자치단체가 감치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형석 위원 국세에는 지금 도입이 돼 있고 지방세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치제도를 통해서 납부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 같은 경우도 지방세 체납 9억이 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실제로 이렇게 거부하고 안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체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렇게 인체를 구속하거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상습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부 집행이 필요할 텐데 행정부 자체가 이런 부분을 신중 검토한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감치제도

는 사실상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마지막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가 공개제도도 하고 있고 또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요.

○이형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상존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또 저희 지방세조합……

○이형석 위원 도저히 기존에 있는 제도나 법률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감치제도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런 정도로 제도를 도입해야지만 이런 상습체납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차관님, 만약에 이 감치제도 도입된다면 1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추정 인원이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재 이게 다 앤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현재 지금 국세를 시행했는데 대상자가 국세의 경우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형석 위원 미미한 것은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이형석 위원 미미한 것은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행정기관 자체가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국세도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감치를 시행했는데 지금 이게…… 굳이 국세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이 제도 만들었을 때 예측하고 실제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주 아주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을 저희가 좀 보고요, 또 경찰하고도……

○이형석 위원 국세도 지금 감치의 사례는 미미하지만 감치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도입했는지? 지방세도 당연히 이것은 도입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 시간을 좀 주시면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감치제도를 도입해도 경찰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이형석 위원 경찰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제가 들어 보니까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업무량이 많

다고 그래서 이런 제도 도입을 부정한다? 경찰청의 그런 의견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소위원장 박재호 경찰청 나와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형석 위원 경찰청 나오셨어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예,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치가 여러 종류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 감치나 또 법정질서 위반 감치나 등등 해서 법원에서 감치 집행장을 발부하는 건수가, 발부돼 가지고 저희들 경찰한테 접수되는 건수가 매년 약 3만 40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원 재판 진행이나 민사재판 관련한 감치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국세징수법에도 도입이 됐고 이번에 지방세징수법에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 경찰의 입장은 감치집행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일선에 굉장한 부담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되면 소재 확인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구대 파출소나 현장의 경찰관들이, 긴급신고에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이런 민사와 관련된, 심지어 또 세금 체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까지 집행에 동원이 됨으로써 상당히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형석 위원 당연히 불만은 나올 수 있지요. 지금 경찰청의 실제 감치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현재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접수가 3만 4000건인데 집행은 한 1700건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한 4%?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그것은 집행이고 소재 확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지금 한 4%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경찰?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1700건이면, 3만 4000건 중에서 1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법원 감치 결정률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돼서 한 39% 정도 되고,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감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위원님, 현장에서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는, 집행을 이외에 소재 확인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형석 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충원해서 하는 거지요, 당연히. 지금 인력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다, 저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게 이게 간접강제 수단이고 또 기관 독립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으로……

○**이형석 위원** 자, 됐습니다.

차관님, 이것 국세 감치제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면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자, 이렇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을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있어도 안 내는 것은 사기죄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범죄예요.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면 여러 가정이 자살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범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국가에 맞게 돈에 대한 벌이 더 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찰은 업무량이 많다 어렵다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옳게 정착이 되는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국세하고 같이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효과도 보시고 해서 내일 이것은 다시 또 체크를 한번 해서 하는 걸로 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중증의 명의신탁재산 물적 납세의무의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재산의 명의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나 세액 확정 및 고지 등의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0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중증재산의 명의수탁자를 별도의 물적 납세의무자로 추가하였으나 징수 절차에 대해서 내용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중증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중증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쪽, 지방세 납부수단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지방세 납부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백혜련 의원안은 지방세 납부 시 간편결제방식에 의한 납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2조에 따르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용도를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으로 규정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가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인 조세의 납부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용도를 먼저 변경하는 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국세 납부방법으로 추가로 통신과금 서비스가 도입이 된 바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 문제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백혜련 위원 예.

○소위원장 박재호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이것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이 먼저 개정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실제로 국민들의 이런 세금 납부에서 간편결제방식이라든지 전자지급방식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백혜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조항을 바꾸는 작업이 당연히 저는 돼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좀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의 납세편의 차원에서 납부수단을 최대한 다양화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다양해지고 있는 납부수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용성이 확보되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가 그것을 납부받아서 바로 세출에 쓸 수 있는 용도의 지불수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즉각 즉각 그 부분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납부수단을 열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어서 그것이 검증되면 지방세 납부수단으로는 바로바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백혜련 위원 간편결제방식 같은 경우 이미 일반 재화 구입이나 이런 것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국가가 이 세금 징수에 못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뒤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개정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저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바꿔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차관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랬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뭔가요, 예를 들어 주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를 들면 수수료 문제도 발생되고요. 또 그 지불수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바로 잡아서 현금으로 정리할 수 없는 수단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사용 범위가 조금 확대된 것이 검증이 되면 지자체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저는 여기 2019년도에 추가로 도입된 통신과금서비스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게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부담을 어느 주체로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제하고, 부담을 떠안고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한 지불수단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일부 도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면 전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이것 이후로는 검토를 안 하신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소비자들은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거든요. 가는데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말 급격하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하나하나 고쳐서는 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열어 주고 선택권을 줘야 돼서, 예를 들면 만약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1차는 그 수단 지불 방법을 늘려 주고 그것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수수료는 국민 부담이어야 된다 그러면 선택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영업적으로 이런 서비스업자들이 그냥 광고비용 수수료에 태우면 되니까, 우리 지불수단을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열어만 주시면 국민이 선택하든 시장이 국민 서비스를 하나 고안해 내든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0점짜리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 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여시면 시장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수정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전향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열 수가…… 관계법들과 정비가 필요해서 당장은 못 여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가장 빠르게 했을 때 언제 열 수 있나요, 가장 빠르게 의지를 갖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와 금융위나 관련된 기관과 이 부분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면 저희는 시차 없이 지방제도 바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희 의원실에다가 좀 보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관련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방법론에 대한 계획도 좀 보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것 행안부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위에 이런 조항이 뭐가 잘못됐는데 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행안부라는 곳이 국가 전체의 진산이고 뭐고 다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내년 돼서 또 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마다 이렇게 해 본들 뭐가 선도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우리 편한 대로만 하고 있고 전혀 변화가 없고 법이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그런 세상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되든 안 되든 오늘 이 논의가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이나 또는 다른 타 법률에 어찌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내일 그것 할 때 딱 깔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마무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쪽, 5번입니다.

14쪽은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과세정보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볼 수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수집·기록·저장·이용 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 침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개인정보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원님께서 내신 안을 부분 수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 자체는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모녀 자살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잘 검토해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7쪽입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서 압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고액·상습 채납자의 가상자산 이전 요구 및 압류한 가상자산의 거래시장 매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무체재산권 등 압류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 시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를 하고 이전 요구에 불응 시 수색압류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 근거가 없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 요구 및 매각을 직접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가상자산이 압류대상인 경우에 채납자 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채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의 대상인 압류재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이 큰 점과 사업자를 통한 즉시 매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제가 이 건은 상임위에서 사실 장관님께도 지적을 드렸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질문이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확인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제가 왜 여쭙보냐 하면 지금 국세랑 지방세 과세하는 체제가 동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이것을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하는 것 지금 1년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를 1년 미루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압류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견들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 차원에서 대응 준비가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이것 국세와 동반 개정 여부를 기재위하고 확인을 해서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고액·상습 채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세 논의과정하고 저희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국세가 통과되었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이 맞추면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것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과세 유예랑 맞물리면서 또 다른 논리로 시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한 압류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 사항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압류 조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시차가 있어도 고민할 것 같은……

○이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원까지 가면 1년 동안 소득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세금 유예가 왔는데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해 보여요, 집행을 막상 시작하려면. 그냥 순순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재판 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기재부와 심층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잘, 조금 전에 이영 위원님도 하시고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가상자산을 바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직불전자수단 이런 것은 왜 빨리 안 해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는데 왜 주민들이 내겠다는 간편결제 이런 것을 왜 빨리 안 하는지,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행안부가 좀 더 분

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의 도입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 채납자나 담보물 소유자 외의 공유자 등에 대한 2차 공매통지 시 발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매자 등이 최초 공매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재공매통지 시에 의도적으로 송달 불능을 초래하여 채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차 공매통지의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게 발신주의가 적용되면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채납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일부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인은 1차 공매통지를 받은 자로서 해당 공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는 점 그리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3쪽 이하입니다.

먼저 체류 관련 허가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의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체류 관련 허가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국내 거소신고나 허가, 외국인 등록 등 허가 이외에도 신고, 허가, 등록 등이 다 있으므로 이것을 ‘허가 등’으로 고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25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으로서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 시에 합산 체납액 기준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 당시에 지방세조합을 신설하여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세조합의 장이 위탁받은 합산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르게 규정되어 이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조합의 당초 시행일인 2022년 2월 3일에 앞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8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결손처분 유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시효완성정리로,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징수 가망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납부의무 소멸 사유의 하나로 결손처분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7년 10월 1일부터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이미 내부적 사무 처리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납자는 결손처분을 면책적 의미의 처분으로 오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 징수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세 채납 관련 실무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조합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일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차관계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경우가 시효를 보통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5년입니다.

○김형동 위원 5년인데 이것 시효를 중단시키는 과세관청의 조건이나 행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독촉이나 압류 등 일정한 행정처분이 나가면 시효는 연장됩니다.

○김형동 위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받고 얘기했을 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거의 완성돼서 회계처리상의 결손처분으로 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김형동 위원 극히 드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쪽입니다.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등기 후 등록해야 하는 대형선박과 등록만 하는 소형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등기 대상 물건과 등록 대상 물건을 구분하여 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은 등기 없이 등록하는 소형선박과 등기 후 등록하는 대형선박으로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여 등록 대상인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대형선박의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하는 중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선박법의 구분을 명확히 반영하여 압류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2쪽입니다.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 관련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익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매 등과 관련하여 자산관

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조합이 설립되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 배분의 대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공매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고 11절의2를 신설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각 절차마다 대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0쪽입니다.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가산금 등 일부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통 일자에 맞춰서 정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통 일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시행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자료 2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건 역시 의결은 법률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끝낸 후에 종합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논쟁 쟁점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하는 것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법안심사자료 3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전자송달 서비스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민간 통신망을 통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 전자송달 방법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흔히 말하는 위택스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종이 고지서 발송을 병행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전자송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그전에는 그냥 종이로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종이도 했고요.

○김형동 위원 등기의 개념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령자가 확인해 주는 절차가 들어갔습니까, 송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등기 개념은 아니구요, 송달 고지.

○김형동 위원 그냥 고지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쪽입니다.

채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입니다.

앞서 지방세징수법에서 보신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채류 관련 허가'를 '채류 관련 허가 등'으로 하여 신고,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쪽입니다.

채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 내용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채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납자의 신청으로 채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다 적극적인 채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사유를 추가하고 채납자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쪽, 결손처분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결손처분에 대한 채납자의 오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10쪽입니다.

압류 효력 발생을 위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특히 선박법에 따라 등기·등록되는 선박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쪽,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수색 등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삼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에 ‘재산 보관 및 재산 이전 거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하는 사유는 최근 등장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쪽입니다.

시행시기 조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통 지연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위자료 3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건 역시 의결은 법률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끝낸 후에 종합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가 4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 다 해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5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다가 합시다. 10분 쉬고 점심을 12시부터, 정확하게 2시에 다시 딱 시작해서 오늘은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지간한 일정은 비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분 후 11시 27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법안 심사자료 4-1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입니다.

4-1로 나눠 놓은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문제 없는 부분은 빠르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은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어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그 재산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쪽입니다.

매각·증여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감면 추정 사유가 되는 매각·증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이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되 매각·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 즉 상속이나 수용 등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한 소유권 이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정 대상을 명확하

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추정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지방세 특례의 원칙에 대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부여한 지방세 특례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다면 주기적으로 지방세 특례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사회환경 변화 등에 맞춰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감면의 적용 기간을 정하여 왔다는 점과 현행법에서 감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도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

○김민철 위원 차관님,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방세에 국한해서 연장하면 3년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2년도 있고 5년도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때 특별하게 검토를 건건이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기한을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전문 연구기관도 있고 해서 3년 단위로 일몰 기간을 정하면 저희가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또 저희가 설계한 분석, 예비타당성이나 심층평가 기

준에 맞는지 등등을 검토를 좀 엄격하게 해서 이 법 자체가 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 3년에 맞춰서가 아니라 어떤 곳은 5년을 해도 그것은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3년으로 일괄 다 해 놓으면 지금 이 시점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세 특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정한다는 것뿐이지 현재 5년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일괄해서 3년으로 다 조정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5년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연장을 하면 5년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3년 연장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김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김민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해 놓고 필요할 때 또 더 연장시켜 주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5년은 없고요, 3년……

○김민철 위원 원칙으로 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해 놓고 또 뒤에 연장을 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지 모든 걸 다…… 극한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운영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이거는 제도를 좀 유연성 있게 하자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3년으로 하는 게……

○**김민철 위원** 나중에 좀 처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거는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김민철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자경농민 감면대상 취득농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종전의 상속·유상 취득 농지에서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를 감면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의 정의 변경을 통하여 세정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더라도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민들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이 개정되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의가 되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이 함께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쪽입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정점식 의원안이 2023년, 김형동·이원택 의원안은 2024년, 김민철 의원안은 25년, 윤재갑·홍문표·이달곤 의원안은 26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2억 4000입니다.

2020년 면제 세액이 2억 4400만 원가량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지자체 부담이 적고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혜택인 점 그리고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는 194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과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그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인 점 그리고 농민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정부 측은 어떤 의견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종료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행정수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세적인 성격보다는 사실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치구의 세목은 2개입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자치구는 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특정 수수료를 받는 자치구 성격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까지도 감면을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 원칙과도 불일치가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등록면허세는 종료를 하고요. 앞으로 감면 신설에 대해서도 대단히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올해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보니까 2억 4400만 원가량이라면 크지도 않은데 이 부분을 굳이, 지금 하는 걸 좀 연장을 몇 년이라도 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감면은 조세지출 제도입니다. 지방세가 한 100조 정도 세입이 연간 되는데 그중에 특례 제도를 통해서 조세로 원천적으로 지출을 하는 액수가 5조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조 중에 5조 이상은 세입 조치조차 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조세로 다 지출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맞고.

특히 세금이라고는 되어져 있으나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것들은 그것은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요.

○**김민철 위원** 농민 여기는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지방세…… 이런 것 같아요. 재정분권을 하면서 행안부가 지방세를 늘려주고자 감면되던 거를 전부 이렇게 좀 뒤랄까, 연장을 안 하는 쪽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잡고 있나요, 혹시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도 되고 연

장도 됩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일몰 도래하는 것이 한 3조 9445억 되는데요. 이 중에 연장되는 게 거의 3조 9425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만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연장이 되고요. 또 지금 신설되는 것도 56억이나 신설이 돼서 실질적인 총량은 더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은 신설·연장이 계속되고요. 또 불가피하게 기능을 다 했다 또는 이 감면 제도가 지나치게 남설돼 있다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김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연장해 줘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걸 연장하게 되면 기초의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면허 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걸 세금적 성격은 사실상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로는 돼 있지만.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부과금적 성격인데 이거를 조세라고 해서 면제를 시켜주면 다른 많은 분들이 내는 조세와 형평성이 일단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여권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적 성격의 것인데 조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제해 주면 특정한 분들만 이익을 보는 경향이 돼서 조세 체계상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경농민들이 하는 도로나 하천 등 점용은 사실상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감면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김민철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전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부작용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사실상 한번 감면이 시작이 되면 종료하기가 어렵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연장, 연장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계속 연장을 해 왔다는 부분은 저희 잘못도 있고요. 또 많은 지자체로부터도 이 성격은 좀 종료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 정리를……

○**김민철 위원** 지자체에서 종료를 해 달라고 어디 어디에서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은…… 등록면

허세는 그 부분의 면허를 받는 분들만 내는 부분이고요.

○**김민철 위원** 아니, 2억 40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등록면허를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으신 분들이 내는 부분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정리해 달라는……

○**소위원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는 이걸 취소할 때도 됐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는 이런 면도 볼 수 있으니까 우선 이거는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쪽, 귀농인 취득 농지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으며 연간 감면 규모는 26억 원입니다.

조명희 의원안과 정부안은 귀농인의 요건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까지 적용토록 완화하며 정부안에서는 추가적으로 감면 대상에 농업용 시설을 추가하는 등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요건 완화, 즉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소를 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30km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농업용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귀농인의 취득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또는 2024년, 26년 이렇게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지구 등의 간척지 조성 사업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2017년 이후 감면 실적이 없다는 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특례가 별도로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불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종료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종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정점식 의원안은 2023년 또는 24년, 25년, 26년까지 연장하는 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연간 감면 규모는 252억입니다.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 농어업인의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감면 규모는 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감면을 축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용자담보물 등기 시 비용을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농어업인의 비

용 부담이 전가되던 관행이 차단된 점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상품 이익률의 하락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그 부담을 우회적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감면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몰기한 연장은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6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에 일몰기한을 2023년, 24년, 26년 등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9억 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 면제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필요성에 비취 볼 때 일몰기한 연장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은 3년 주기로 해 왔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8쪽,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감면 규모는 3억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0쪽,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입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또는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과 생산·검사 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구매·판매 사업 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하게 됨에 따라서 제출된 안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경제사업 수행 주체가 농협경제지주로 변경되었는데 현행법 14조 1항의 감면 대상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어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과 그리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담세력이 약화된 점 그리고 제14조의2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을 하여 왔으나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게 된 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나타나 경영 상태가 개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제14조제1항 현행 조항의 개정보다는 제14조의2의 일몰기한을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신중 검토 의견에 보면 농협경제지주는 주식회사인 반면 수협중앙회나 이런 부분들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식상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주식회사인 농협경제지주회사하고 수협이나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법인하고는 일단 과세체계가 다르고요. 또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17년도에 감면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짧게만 여쭙볼게요.

그런데 농협경제지주가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기본 출발 베이스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써야 된다, 농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된다 이 목적에 반하도록 회사가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물론입니다. 물론이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인데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감면을 다시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련된 유사 동종업계에서의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이 문제가 결국은 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하나로마트 말씀도 하셨는데 경제사업부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농민들한테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차관님, 여기 정부 의견대로 신중 검토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잘 한번, 거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아직 지금…… 유사 성격의 협동조합중앙회 감면 일몰이 23년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이쪽 농협경제

지주회사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하겠는데요. 아직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만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범위한 의미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다만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렵고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신설해서 감면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신설도 56억이나 돼서 총액이 늘어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법에 법정 목표관리율이 있습니다. 감면율을 저희가 지켜야 되거든요. 13.8%라고 하는 감면율을 지켜야만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안정성·예측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23년도에 유사 성격의 협동조합중앙회들이 일몰이 되니까 그때 스펙트럼을 펼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그리고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307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 특례의 연장을 하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9년 말에 국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아직 이 일몰기한이 1년 남아 있는 점 그리고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를 위해서 3년의 일몰기한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 일몰기한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일몰기한 도래에 맞추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떤 것을 수용한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3년, 2024년, 2026년의 안이 나와 있으며 연간 감면 규모는 현재 68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완화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에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보완으로 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추정 대상이 되는 점과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니까요 마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자료 4-1의 42쪽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윤재옥·권명호 의원안, 정부안은 장애인의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서 연간 감면 규모는 1811억입니다. 전봉민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준을 3500cc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이철규 의원안은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3000cc까지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 차량의 종류가 모든 자동차가 아닌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필요한 차량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이동 편의 증진 및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3년의 일몰기한으로 주기적으로 설정해 왔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량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담세력이 높은 계층에 세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을 하되 배기량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런 보철용이나 생업차량들이 평균적인 자동차 cc가 대개 평균 얼마 정도 되지요? 2000cc 이하인가요, 아니면 2000cc 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하는지 통계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승용차인 경우에는 2000cc 이하에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마 승용차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승합차, 그러니까 카니발 이런 종류의 차는 cc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휠체어를 탑재하기에 가능한 부분을 따지면 그것은 cc 제한 없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3000cc까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승용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cc 제한을 뒀던 거고요. 실제 장애인분들이 활용하실 가능성이 높은 큰 차에 대해서는 cc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승용차의 cc를 3000cc 이렇게 배기량을 높이게 되면 일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큰 차를 타지만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형석 위원 3000cc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뭐 그걸…… 요즘에 3000cc까지가 크게 그렇게, 뭐랄까 부유층이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부유층이 타는 차들은 훨씬 더 cc들이 높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게 사실상 장애인·한센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세 부분까지도 다 감면해 주는, 장애인·한센인 같은 분들은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하거든요. 목적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감면을 해 주는데 이 cc까지 올려 주면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저희 데이터에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하고 계신데 그 약간의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특례 규정을 완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 밑에 보니까 지금도 자동차 세율에 2000cc 이하는 취득세 100%, 2500cc 이하는 70%, 3000cc 이하는 50% 이렇게 돼 있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 주셨는데요, 정부의 현행 안은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등세율……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쪽은 한센인과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1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한센인정착농원 내에 거주하는 한센인이 264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에 97%가 60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이 80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재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면 대상 역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 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해서 3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50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서영교 의원안과 이영 의원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규모는 420억 원입니다.

윤재옥 의원안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되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직접사용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몰기한 연장은 저출산 대응 필요성과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영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면 요건 명확화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현행법이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에서 지방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형석 위원 정부안 유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3년 연장은 하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 관련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조항의 일몰 규정을 연장·폐지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현재 연간 감면 규모는 290억 원입니다.

각 의원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도읍·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김영배 의원안은 모든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법인·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배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2020년 1월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열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도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로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세 면제 혜택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감면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문화 사업이나 성폭력 방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

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배제는 최소납부세제가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영세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몰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 왔다는 점과 해당 감면 규정이 2021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정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서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2019년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된 사안입니다. 22년이 되어야, 내년이 되어야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 도래 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검토의견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면 대상 시설 확대와 관련돼서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의견을 이종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분석하셨지만 다문화 사업이나 성폭력 방지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의 형평성을 논한다고 그랬는데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허용하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자 이런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도 지금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감면 대상이 될지에 대한 복지부의 데이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년 일몰이 도래할 때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데이터와 저희 제도 설계를 잘 조합시켜서 내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감면 대상 시설 범위를 넓히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넓히면 어디까지를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넓혀 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자체도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지자체 의견을 담아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의사는 있는데 해당 행정부,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먼저 개념이나 범위를 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법상 정리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형동 위원 하여튼 의지는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꼭 필요한 경우는 감면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한꺼번에 너무 늘어나거나 또 현장에서 이게 정말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세제 감면이 아니고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넓은 의미에서 세제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 그것은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3쪽입니다.

73쪽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영교·윤재옥 의원안과 정부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홍성국 의원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동일한데 감면 요건을 2자녀를 둔

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육자의 요건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자녀 2명을 둔 가구수가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수에 비해서 4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을 하되 감면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고,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제출된 것도 출산율을 어떻게든 제고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3자녀를 계속 유지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위원님, 지금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에서 이미 다자녀에 대한 정의부터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제도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선행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2자녀 이상을 한다고 하는 게 부담이 돼서 종합적인 결론이 날 때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방향성은 맞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혜택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 검토가 될 때 포함해서 하겠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같이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조금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정부부처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둘 기준으로 하회하거나 이미 조정해서 들어간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직 보편적 기준으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게 2자녀로 결정이 되면 관련된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 1명이라 하더라도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마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보다 선도적으로 앞서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정부안이 나와서 2명일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배려나 보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차관께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책 같은 걸 내놓을 때 그 지역이라도 선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고요. 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인데 3자녀에 비해서 4배 이상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행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고요. 특히 저 같은 지방이나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지방 균형이나 소멸을 걱정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자 이런 의견보다는 2명이지만 다자녀…… 다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보전을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게 지금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부의 보전이 명확하게 매칭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당장 지금 244

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인구정책TF에서 나올 때 저희도 전향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행안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설득도 하고 위원님 말씀따라 한 자녀라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례로 하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 부분을 지역에나 지방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서 그걸 보상·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재원이 있으면 그걸 메워 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게 부족하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에서 특히 지방에서, 소멸지역에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왜 그걸 보전을 못 해 줍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1조 원 규모 기금 마련을 했고요, 그 기금으로 모든 게 다 보완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토론이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7쪽, 15번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되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액이 총 14억 550만 원가량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1759만 원으로 규모가 얼마 안 되고 건당 감면액 역시 6만 1300원가량으로 감면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하되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 사회적 기업 개수가 몇 개고, 흔히 말하는 수익이 있으니까 이거 면허세가 됐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 내지 수익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재 사회적 기업은 총 2777개가 지금 활동 중인 걸로 나와 있고요. 수지 분석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세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감면액이나 감면총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총수익액 없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감면이지 소득세는 국세 부분이어서……

○**김형동 위원** 아, 물건에 대한 것,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도 데이터를 더 모아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농협경제지주 관련해서 감면 신설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 주셨고 동의를 하는데 그때 말씀 주신 것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처럼,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예를 드셨는데 사회적 기업의 탈을 쓰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관련 부처에 통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9쪽, 16번입니다.

자녀양육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입니다.

개정안은 유자녀 가구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자녀는 취득세의 10%, 2자녀는 20%, 3자녀 30%, 4자녀 이상이면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몰기한은 2024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취득세는 2020년 기준 29.5조 원가량으로 전체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주택분이 10.9조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게 되는 경우 지방세입 감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것은 해야 되는 법은 맞는데 지방 세수가 문제가 된다 이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발표되겠습니다마는 인구정책TF에서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나올 때 저희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지금 유자녀 가구수가 거의 500만 가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게 되면 광역세인 취득세가 엄청나게 충격이 올 것 같아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아까 TF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언제 발표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국방인력 등등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교육 관련된 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 이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어느 한쪽만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혜택 이 부분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 출산 관련 법안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범정부 TF도 있다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지방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뒤에 짝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렇게 인구정책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는 그렇지만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TF가 구성될 때 이런 법안 다 같이 넣으면 좋은 의견이 될 겁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 중이라도 정리가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지방세에 대한 정부 보전 방안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3쪽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안으로서 서영교 의원안·정부안은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2억 원이고, 김경협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주민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세 감면 신설에 관해서는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과세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금액이고, 주민세 균등분 금액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운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을 하면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걷는 기본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노동조합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체납이 어떻게 되고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징구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도 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미납이든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다가 사라져 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채납되는 거 말씀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징수를 못 하게 된 상황이든 통계가 나와 있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그 데이터도 챙겨서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말고 단체 중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그런 비법인사단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면제는 안 되는 거고요. 아주 취약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한센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기본적인 데를 제외하고는 주민세는 감면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작년에도 한번 논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인두세 개념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인두세 개념도 있고요……

○**김형동 위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주민세를 매겨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운영하는 예가 많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데서는 당연히 주민세 개념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의식 그리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최소 필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외국 사례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데서는 기본 세목입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김형동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 관련해서 주민세가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고 이후에 노동조합이 해산되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과세는 됐지만 징수가 안 된 예,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5쪽 18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영교·권명호 의원안, 정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460억 원입니다.

구자근·윤주경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고, 이철규 의원안은 배기량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봉민 의원안은 배기량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 도입에 대해서는 군인,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과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그 수가 많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급여금 등 일정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부상에 대하여 본인 과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봐서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기량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담세력이 높은 계층에 세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례 제도 원칙상 재정 지원과 중복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배기량 확대는 아까 장애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배기량 문제요. 그것은 휘발유, 가솔린을 쓰는 차량하고 디젤하고 좀 상이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연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승용차냐 아니면 승합차냐

에 따라서 승용차만 cc에 차별을 두고요. 그다음에 월세에 태우기 좋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cc 제한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디젤, 소위 말하면 승합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의 제한을 안 받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최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4쪽입니다.

정부 제출안 제30조에서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2억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관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일몰기한 연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96쪽입니다.

96쪽, 20번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이 6건이 있으므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일단 연간 감면 규모는 8780억 원 수준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건설임대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소병훈 의원안은 임대주택 중에 폐지되는 유형을 감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매입임대 감면 범위에 지금 현재 LH만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9억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매입임대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숙박시설, 고시원 등 건축물로 확대하며 공공매입임대 취득세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허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안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한병도 의원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장경태 의원안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여전히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병도 의원안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 가액 기준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수도권 기준으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안은 그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면 기준 상한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폐지되는 유형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에 정부가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매입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이미 반영된 내용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의 특성상 감면된 취득세의 추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이 가능한 점에 비추 본다면 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사업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85조의2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는바 85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별 조례를 통한 자율적인 재산세 감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매입임대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주택 이외에 주택 및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매입임대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하향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재산세 감면율은 유지하되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고 있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충분한 담세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감면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감면된 재산세의 추정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주택

을 지속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시의 재산세 감면액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일단 정부 제출안을 유지면서 한병도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이 한병도 의원님 안은 수용하고 소병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폐지유형 감면 배제는 수용하되 지방공사에 대해 감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백혜련 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헛갈려.

○이해식 위원 임대주택, 96페이지.

○백혜련 위원 즉 뒤에까지 다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재호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96쪽부터 12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9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의원님들이 냈던 안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한병도 의원안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4년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H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25%로 감면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임대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두고요. 건설임대주택의 기준 가액에 대해서 수도권은 9억 원, 비수도

권은 3억 원으로, 현행 6억 원보다 9억 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병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폐지 유형의 감면 배제 그것 하나만 기타 부분에서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특별한 것 없으시면……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개인이, 민간이 하거나 지방공사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 다 50% 감면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백혜련 위원 그리고 LH가 할 때는 취득세가 반, 25%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백혜련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담세력이 있다 그 이유 하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주체는 담세력이 있고 한 주체는 담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법이 기준이 달라지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거든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일단 25%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주택 및 건축물로 대상이 넓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LH가 참여하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지면 LH가 받는 지방세 감면의 규모와 종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 사업 자체로는 사실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굉장히 저리로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보니까 매입임대 정부 물량 연 3만 호 중 77%에 해당하는 2.3만 호를 앞으로 LH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으로는 좀 더 LH의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건데 가장 큰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대해서만 담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세금을 이렇게 더, 다른 지방공사나 민간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예요? 제가 알

기로는 국토부에서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혹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국토부는 현행대로 50%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이 사업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금 관여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건전에 대해서 새롭게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기관이, 물론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늘어난다. 그러면 10개의 새로운 사업을 하면 10개 다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대신 감면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10개 중에 1~2개는 지방세 감면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지방세 감면을 받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LH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주택공급 대책 중에서 LH가 중간에 끼쳐 재건축 사업을 해서 다시 하는 사업 등 포함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새롭게 LH가 감면을 받는 현황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감면이, LH가 새로 한 사업의 지방세 감면이…… 다른 주체들 있잖아요, 민간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그런 주체들이 할 때는 감면이 안 되는 사업들이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그러니까 LH가 민간이 하는 방식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방세 감면을 새롭게 만들어 줬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법이라는 게 주체가 누구든지 단일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담세력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을 하면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의 영역이고요. 저희는 물건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을 LH가 50%를 감면받는 것은 무리하다, 지방공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LH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씩 됐던 것을 취득세만큼은 반만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관계 부처하고도 했고요. LH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LH하고 다 합의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관계 부처하고는 물론 사전에 다 협의를 했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하여튼 LH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LH가 지금처럼 면세를 50% 받아 가지고 지역에 주택공급이나 공적 활동을 더 하는 게, 동기 부여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나중에는 민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그 지역에서 더 원하는 것일지,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LH도 이것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가지요. LH가 왜 세금 더 내는 것을 원하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니, 원한다는 부분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김형동 위원 그것은 차관께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히 지역에 LH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 세금이 무서워서 LH가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됐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LH의 감면액을 보면 취득세·재산세를 합쳐서 한 3000억 이상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LH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방공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방공사가 대행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 LH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현행처럼 50%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형동 위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차관님이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0억이나 되는 세수가 계속 그렇게 감면돼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세금을 이제는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렇다라는 생각을 차관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오히려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LH가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벌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보류하셨다가 내일 또 한 번……

○김형동 위원 하여튼 지난주에 백혜련 위원님도 아마 방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담당자가 오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세금이 족쇄가 돼서, LH가 봄에 일도 있었습니까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 법안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셨고 또 조금의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행안부가 관계 부처와 또 LH 이야기도 듣고, 물론 LH야 감면받는 게 좋겠지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려서 다음 할 때 이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5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신설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목적용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감면율은 취득세의 10%이고 일몰기한은 2022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면 건설자금 저리 지원, 택지공급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10%

감면함으로써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유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약정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2월에 의결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 중으로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28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위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액은 약 109억 원에서 약 55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감면 내용은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정부안에서 취득세 25%, 재산세 25%로 낮춤에 따라서 감면액이 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에 따라 담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로 2020년 결산 기준으로 3조 3028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 사업 운영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연간 2.3만 호 정도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의 담세력과 지방세수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일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정부안대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을 50% 낮추는 것으로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백혜련 위원 이게 아까 그……

○소위원장 박재호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한 번 더 체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앞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앞부분은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었고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대표적인 국가 공기업인 LH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연간 수익을 3조 3000억 정도 내는 국가 공공기관인데 국가 공공기관의 감면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의 의견을 전부 저희가 수렴했고 반으로는 줄여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백혜련 위원 이것은 아까 그 매입용 임대하고 뭐가 다른 것이지요? 형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정선 지방세 특례제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32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시 감면으로서 주택의 유형이 60㎡ 이하의 부동산에 한정이 돼 있고요, LH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31조 6항은 LH가 주택을…… 조문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택의 유형과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조문이 달리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도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는 공공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유형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소규모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것 아니에요? 면적 제한만 더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정선 면적이고요 사업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공공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대상 자체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건축물까지, 숙박시설이나 1·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까지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

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32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주택을 취득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조금씩 차이가,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업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조문을 저희가 달리 설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이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LH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토론할 때까지 자료 제출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그때그때 세금 감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하여간 이것도 함께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0쪽,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고 상시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33억 원입니다.

상시 거주 의미 구체화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해당 서민주택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시 거주 의미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2쪽입니다.

24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주택노후연금 이용을 위해 소유 주택을 담보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31억 원입니다.

먼저 노후연금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 박수

영 의원안과 정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노후연금 담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감면 대상 또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박수영 의원안은 주택가액 산정 방식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가액 산정 방식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액 산출이 어려우므로 박수영 의원안과 같이 가액 산정 방식을 함께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안에서 현행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에 의해서 연금을 담보하던 것을 새로 신탁등기 방식으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등록면허세 감면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의 방식으로 신탁등기를 통한 주택노후연금 가입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안은 이를 반영하여 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당권 설정 방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추어 볼 때 신탁 방식에 대해 감면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7000원가량이므로 감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감면 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담세력과 노인계층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박수영 의원안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하고 가액 산정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

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7쪽입니다.

25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입니다.

5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1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령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외에도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 등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몰기한 연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몰기한의 범위는 3년 주기로 평가식 관리를 실시하여 왔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은 무주택자 주택공급 사업, 흔히 말하는 한국해비타트 사업입니다.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해비타트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9000만 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감면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세수 부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것 없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2쪽,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의 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한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1753억 원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기준가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이영 의원안은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감면 실효성 확보를 위한다면 기준가액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주택가액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일부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에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과 지방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기준 상향에 관한 의원님들 안은 구자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이영 의원안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000만 원 이하의 소득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과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담세력이 더 높은 상대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전체 가구의 약 70%를 포함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면율에 대해서는 구자근 의원안은 취득가액 1억 5000만에서 2억 원 범위의 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기준가액 상향 조정과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그 논의 경과와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34세 이하의 주민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율을 20% 추가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주거 안정

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다른 연령층과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이권이 제기될 수 있는 점, 34세 이하인 사람 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청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명희 의원안과 정부안은 세대별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감면을 적용하고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취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제외되는 연령 기준을 20세 미만에서 미성년자인 경우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세인 취득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설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연령 기준을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안은 이영 의원안입니다. 이영 의원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감면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용 자금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과는 과세 체계가 다르고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취득 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정사유의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정하도록 하고, 조명희 의원안과 정

부안은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 추정하던 것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3년 이내의 주택 매각·증여에 대한 추정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추정 대상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바 일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추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변경한다면 상속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외에 배우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에 대한 지분 매각·증여의 추정 제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몰기한 연장은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각 감면 조항에 대한 평가·관리가 실시되어 왔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가액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동향이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주택법이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상에서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유사 제도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서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체계상의 일관성이나 혼선 방지를 위해서 오피스텔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관계 부처와 저희의 의견이고요.

제도 시행이 작년 7월부터 됐고 향후 시장 변화를 주택 관련 부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 차관님, 지금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있잖아요, 그것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이 어제 소위를 통과했고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전체회의 통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선을, 세율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애최초 딱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취득세 감면이 지금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게 사실 6억이랑 4억으로 올려도 아주 몸에 와닿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수도권에 있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생애 단 한 번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하고 최근에 급등한 부동산 상황 보면 전체적인 가격을 밀고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선이 만약에 수도권도 6억으로 이걸 올리게 되면 이제 저가 주택에 대한 모든 가격 자체가 다 올랐다고 하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 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택 상황이 조금 안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충분히 상의했는데 현행 유지를 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한데요.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때만 하더라도 행안부에서도 이 논의 있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들, 그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냐고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또 그다음 반론이 뭐였냐면 ‘좋아, 서울 경기

세종 몇 개 있잖아요. 빼고 그렇게 안 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게 그냥 짝 밀어 올리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는 많은 고민 끝에, 총체적으로 다 보았을 때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 87%가 4억 원을 초과해요. 그리고 생애최초가 왜 중요하냐면 생애최초의 집을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융자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득에 대해서도 했던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가구 중에 1명만 소위 말하는 별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7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고소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의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30대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를 봤을 때는 9000이면 둘이한 4500씩 받으니까 중소기업, 다 다르기는 하지만 과장 정도, 부장 정도 그 사이를 받아요, 작은 기업까지 치면. 7000만 원이면 맞벌이 부부로 했을 때 사실은 3500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는 취지 자체를 이렇게 정말 소시민들, 맞벌이해 가지고 융자 받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조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 안 들어갔는데 궁금한 게 지금 앞서서 우리 법안 이거 봤을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주거용 오피스텔……

○이영 위원 저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후연금보증 할 때는 그게 담보대상 주택으로 인지를 하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인구의 형태를, 가구의 형태를 조사해보시면 1인가구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1인가구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기보다는 오피스텔을 사서 살아요. 그게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담보로 제출할 때는 이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세상이 변해서 1인가구가 늘고 있어서 오피스텔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걸 주택이 아니고, 저는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의 극적

인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맞게 생애최초 딱 한 번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취득 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저는 선택하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정부가, 국가가 생애최초를 받는 시점에서 딱 한 번만 해 주겠다고 아니라 오피스텔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오피스텔과 주택 중에 한 번은.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시선을 현재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맞춰 줬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양도소득세 과표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 논의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전국 70% 가구가 그 선에, 7000만 원 선에 70% 정도의 가구가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0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은 설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최신 사항으로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데이터 면에서 전체 국민 인구 분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면 그건 저는 같이 합의를 이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 취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하여튼 이것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처와 의견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양성도 한번 열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66쪽 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1420만 호 중에서

96.3%에 달합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현황을 보면 5조 820억 원으로 2019년 결산 기준 과세분 재산세액의 5%는 30%, 95%는 5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개정안에 따라서 대략 2조 5000억 원가량의 재산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과표 구산별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도 재산세가 인하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가 시·군·구세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보전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면 기초 재정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68쪽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세법 정부 개정안에 연계하여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감면이 종료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 구법 조문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1시간 반쯤 했는데 다음 의료기관에 관해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서 잠시 한 15분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를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계속해서 17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30~75%, 재산세 50~75%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권명호 의원안은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의 감면율을 확대하며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고, 한병도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 등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립대학교 등과 동일하게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관 감면 대상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며, 또 다른 한병도 의원안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2022년까지 연장하는 안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사립대 부속 병원에 대한 것이고, 김병욱 의원안은 사립대 부속 병원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10%p 추가 적용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면 대상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는 한병도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오전의 회의 결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신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병도 의원안은 현재의 감면율이 2018년도 심사시 설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만에 감면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산재병원이나 보훈병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립대 부속 병원에 대한 감면율 상향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신설을 위한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감면율이 2018년도 심사시 설정된 것이고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목적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3년 주기로 심사해 왔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추가 감면은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미 대규모의 국비 지원이 있는 점 그리고 특례를 부여하는 조문 중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조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에다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10%p를 공히 상향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의원님들 별로는 특정 병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좀 더 높이거나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병원들에 대한 감면체계는 어렵게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병원에 대한 변동을 주게 되면 다른 병원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체계가 흐트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아까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지방세기본법에서 과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아예 빼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이.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특례에서 빼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것으로……

○이형석 위원 유지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이형석 위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93쪽, 31번이 되겠습니다.

193쪽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사립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또는 2026년까지 연장하거나 유기홍 의원안과 같이 일몰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4885억 원입니다.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되 학교 등에 전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과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의 기부채납 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도는 종료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적인 성격이므로 가급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2020년 감면액이 1800만 원으로 적다는 점, 정당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이 종료되었음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의 기부채납 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154조에서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 납세의무 적용 시 전환 이전의 국공립학교로 간주하도록 하여 타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해당 부동산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3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01쪽입니다.

32번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개정안들은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고 유기홍 의원안은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험·실습용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기한도 정부안은 2024년까지, 유기홍 의원안은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유기홍 의원안은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 규정도 아울러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숙사에 대한 감면과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은 학생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연장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3년 주기로 재심사해 오셨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06쪽입니다.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면제사항입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서 일몰기한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무기한 감면을 적용하려는 내용이고, 김병욱 의원안은 평생교육시설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전공대학과 함께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공공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현행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9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3년 일몰기한을 설정해 왔음을 참

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병욱 의원안은 전공대학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제2항에 따라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은 감면 대상인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교원의 복무 등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등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공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의 지정 절차를 거치므로 그 절차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2021년 4월 기준 41개소로 전공대학에 비해서 감면 대상이 많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17쪽입니다.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김민기 의원안은 2024년까지, 정부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되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종료는 재산세 도

시지역분의 목적세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감면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20쪽입니다.

학술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들은 학술단체 및 장학단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안 및 윤재옥 의원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고 한병도 의원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유기홍 의원안은 일몰기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병도 의원안에 대해서는 2019년 말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개정 당시 장학법인 외에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함께 종료한 점과 목적세의 경우 편익을 누리는 자가 납부 주체여야 한다는 점에서 감면 폐지, 신설 배제가 원칙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25쪽입니다.

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일몰기한은 2022

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 연구개발의 수행 등을 통해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사업수익을 거두고 있고 현행법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는 총 20개 연구기관 중 14개 연구기관이 특정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도 동일 지자체 내에 소재하여 동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경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27쪽 경제·인문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몰기한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제 특례 부여 시에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 등을 거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후 개정 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현행 정부출연기관 24개소 중 13곳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번, 229쪽입니다.

3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정

부 제출안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중견기업들이 일반적인 감면율보다는 높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중견기업 외에 일반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차관님, 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랑 초기중견기업이랑 어떤 구분이 있나요? 초기중견기업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 말씀……

○이영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인 거지요, 구분으로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초기중견기업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 등을 초기중견기업이라고 그룹 분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가 저촉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중견기업은 사실 구분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중소기업 중에 지금 중견기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기중견기업이라는 것을 아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조세특례법상의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조세특례법의 기준이니까요, 별도의 유형은 아니고 매출액 기준 5000억 원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련된 지원 법이나

R&D나 이런 게 전부 다 초기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네 구간이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지방세정책관입니다.

그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법상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유형 분류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로 굳어져서 법적인 구분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R&D 지원부터 시작해서 해외 진출부터 우리나라는 다 나뉘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립됐느냐라고.

국내 기업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 수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시 기업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 위원** 이것을 신설하게 된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갖고는 안 되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이 부분이 작년도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이런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유형 분류가 새로 생기고 그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그 일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 혹시 산자부나 중소기업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산업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31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을 위한 인용조문의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중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규정한 현행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한국환경공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7조 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던 사업들 가운데 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

정됨에 따라서 호 번호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은 이에 맞추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당초 의도하였던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33쪽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재산세 경감을 신설하려는 내용이며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논의 시 일몰기한이 2023년도까지 연장된 바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 감면을 상향이나 재산세 감면의 신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유도 필요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에 일몰이 도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 전략 또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제로 이것에 관한 내용인 것 알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에 아마 조금 더 그것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커튼월식의 아파트가 얼마나 열효율이 없는지를 알면서도 세금 혜택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짓기 빠르고 외관상 좋아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36쪽입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현행 감면과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면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기한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금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에 대한 인정 필요성과 내진 보강 유도의 필요성 그리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에 의한 감면 규정의 실효성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면 제외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제외 대상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 규정하게 된다면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감면이 종료됩니다.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실제 금전적인 노력을 한 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무상 취득자를 유상 취득자와 같이 취급할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 40일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내진성능이 확인될 수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40쪽 42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정부 정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물류단지 입주기업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가 적용중으로 스마트물류센터가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항에 따라서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하여 시중금리 대비 2%p 이자 차이를 보전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원칙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소위자료 4-1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이 건 역시 의결은 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가 끝난 후에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자료 4-2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는 연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244쪽입니다.

43번 신문·통신 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등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를 연장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이 언론 자유의 신장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몰기한 연장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46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개정안은 문화·예술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나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안은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반면에 김윤덕 의원안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은 2019년 개정 당시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면제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목적세라는 점에서 편익을 누리는 자가 납부 주체여야 하므로 가급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목적세 감면 폐지 및 신설 배제는 지방세 지출의 전체적인 개선 목표 아래 추진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49쪽입니다.

45번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인 사회단체에 국민신탁법인 외에 국민신탁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목적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종료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안과 같은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감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개정에 따라서 문화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신탁법인과 유사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함께 해당 규정이 2022년 5월 시행 예정으로 국민신탁단체라는 제도의 도입 후에 그 경과를 지켜보고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중단하는 정부안은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가급적 목적세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52쪽 호텔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46번입니다.

개정안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호텔에 대해서 재산세를 50%(4등급 이상은 25%)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로운 모임 및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호텔업의 경우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지방세 특례를 인정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통한 감면도 가능하고 호텔이 서울 부산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의 하나로 관광숙박업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포함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의 경우에도 호텔업과 유사한 성격의 업종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호텔업만을 대상으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56쪽입니다.

47번은 기업합병이나 분할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먼저 법인 적격합병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과 정비에 관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안은 법인 적격합병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은 제외하며 법인 간 자산교환에 대한 감면은 일몰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현물출자 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규정 역시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위한 재산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규정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 간 자산교환에 대한 감면 중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건수가 15건, 감면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감면을 종료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수·신협조합 등 합병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또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일몰기한 연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3년 주기로 심사하셨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64쪽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 등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간주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3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3년 주기로 평가·관리를 실시하여 왔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266쪽입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확대와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법인등기 등록면

허세 감면 대상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개편에 한정되는데 정부안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개편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개편을 감면 대상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서 기업 활력 및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68쪽입니다.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정과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안은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5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점과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가져서 감면 최소화 원칙을 정비해 오고 있다는 점, 농협·수협 등 조합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공익성 등에 비추어 같은 수준의 감면 규정을 두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70쪽입니다.

270쪽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최춘식 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 정점식 의원안은 2년 연장, 홍문표·이달곤 의원안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정부안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정부안에서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금융기관 등의 담세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의 지원 필요성과 재산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의 조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75쪽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할 때 이영 의원안은 취득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며, 중소기업이 해당 자산을 다시 취득할 때 이영 의원안은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정부안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보유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상향 시 자산관리공사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세력이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자산 재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 촉진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영 의원안과 정부안이 취득세 감면율과 일몰기한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차관님, 사실 기업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내놔야 하는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회사 문을 닫지 말고 직원들 급여를 줘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순간 취득세를 100%가 아니라 50%를 감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쓰고 있던 건물을 내놓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비용도 없어서 이 위기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그 건물에 그냥 살아요, 임대료에 취득세 50%를 더한 추가된 임대료를 내고, 자기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잡히고 자기가 임대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취득세까지 얹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됐다는 건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너무 바람직한 거거든요,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회생이 불가능해서 그게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매각이 될 때는 그때는 취득세고 뭐고 상관이 없는데 다시 찾아올 때, 내 것 찾아오는데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원칙도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S&LB를 만든 이유 자체가 기업이 문을 닫으면 오너 한 명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길에 나왔어야 되니까 자산이 있으면 그거라도 명분으로 잡고 회생할 수 있게 지원해 주자라는, 그냥은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은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힘들어서 잡히는 사람 세금 내고 또 가져갈 때 정말 완전히 기사회생해 갖고 막 웃으면서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파느니 내가 다시 팔더라도 여력이 되니까 일단 찾자 그런데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봤을 때 이것 좀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세수에 영향을 극대화, 엄청나게 주면 저도 고민해 보겠는데 57개 기업이 바뀌었더라고요. 11월 현재 57곳이에요. 그중에서 6곳은 재매각됐어

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가 기업회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매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51곳이 지금 버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나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니까 정부 제출안 유지 중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인 경영회생이 있더라고요. 회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세수에 영향을 받을 만큼 도미노 상태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면 사실 그 고통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50개 이 정도니까 저는 이것을 원래 프로그램 취지대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보니까 연 12억, 그 다음에 6억 정도뿐이 예상이 되지 않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이 제도 설계가 잘됐다면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적일 텐데요 극히 적다는 얘기는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않습니다. 특정돼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이 특례 제도에 맞는 거냐, 일응 보면……

○이영 위원 차관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업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들이, 사장했던 사람들이 제1금융권 안 가고 제3금융권까지 가거든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제1금융권에서 담보로 잡아 주면 이 프로그램까지 안 갑니다.

이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을 닫아 버리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금융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게 일을 영성하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기보, 신보,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이런 곳이 그나마도 기업의 건전성을 봤을 때 회생, 그러니까 내 돈 때일 것보다도 기업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51%가 넘으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취지에 맞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이것은…… 차관님,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데 사실 기업이 재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고용이나 여러 가지로 가장 좋아서, 물론 한계기업이 있고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79쪽입니다.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광업 지원을 위한 광업권의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 연장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광업권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감면 건수 및 액수 또한 2019년도 기준으로 301건, 867만 원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몰기한 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은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국제선박이나 연안항로·외국항로 선박,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국제선박이나 연안항로·외국항로 선박, 천연가스 선박에 대해 2024년까지 연장하며 서영교 의원안은 국제선박에 대해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 특례 부여를 통해서 해외 국가 소속으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의 해운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연안항로취항 천연가스 선박 등에 대한 세제 특례 부여로 항만 인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몰기한 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87쪽입니다.

287쪽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김용판 의원안은

취득세 세율을 2%p 경감, 재산세 100%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이며 이영 의원안은 취득세 세율 2%p 경감, 재산세 100%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정부 제출안은 현행과 같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대형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입으로서 김용판 의원안과 이영 의원안이 재산세 감면을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대형항공사 2개사를 제외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대형항공사 2개사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은 2018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시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대형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입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대상이 대형항공사 2개사로 특정된다는 점 그리고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재산세 감면액이 18억 4700만 원으로 급감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2020년도에는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을 통해서 재산세 감면액이 70억으로 추산되어 재산세 감면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대형항공사들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21년도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을 상향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경우에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업계의 총 비용부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공항시설 사용료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들과 정부 차원에서 항공업계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 공항시설 사용료 및 납부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형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항공업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래서 그전에 지금 대형항공사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예외를 시켰는데 지금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저가항공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줬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난 2018년도에 특별법 심사 시 대형항공사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87년부터 장기간 감면 혜택을 확보했구요. 사실상 국제경쟁력지수로 보면, ICAO에서 판단한 것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 항공대국이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이 항공업계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그다음에 공공 부문 항공권 선구매, 고용유지 지원금,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거의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형항공사 두 곳은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 증가로 인해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분기 수익 자체가 상당히 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얘기합니다만 대형항공사를 예전의 감면 혜택을 누리는 범위로 다시 넣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안대로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화물운송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은 좀 증가했다, 승객운송은 현격하게 감소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난 게 아니고 그 내부를 살펴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직원 정원의 68%가 유·무급 휴직으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감축을 통해서 지금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특히 항공운수산업에 대한 특수상황이 이런 때에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기존에 대형항공사에 배제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2018년도에 포함시킬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너무 장기간 대형항공사가 감면 혜택을 일방적으로 누렸다고 하는 많은 지적과 또 개선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압력이 있었고요.

마침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명분을 가졌다고는 보는데 그 명분이 그렇게 절박한 거냐, 감면을 다시 돌릴 정도로 절박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절박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직원들의 68%가 유·무급 휴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상황도 좀 감안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대형항공사에게도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다시 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 위원 2018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실수를 하면 처벌을 해도 본질적인 것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아시지만 사실 갑질 논란부터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적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혜에 가깝게 혜택을 주고 있는 데부터 시작된 검토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탱이 가능하면 좋은데 앞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두 번 얘기를 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렵다고 사실 모든 것을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2019년 항공사 여객수송 순위 같은 경우를 IATA에서 뽑아 봤는데 대한항공이 28위 했고 아시아나가 42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항공기의 경쟁력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

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취득세와 재산세 현황이 어떤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열거한 나라 중에 취득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재산세는 미국이랑 일본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80~90%를 감면해 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주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있는 주가 34%에 해당하는 17개 주가 부과를 하고 있었고요, 미부과하는 데가 33개 주예요.

그래서 이 법이 처음 실행됐을 때의 계기, 우리가 정말 형평성과 세금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서 접근했느냐가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코로나로 이게 형평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주요 국가 항공기 지방세·재산세 부과 다 조사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누적 부채 보니까 아시아나는 5년간 1조 500억이고요, 대한항공 5700억 누적 손실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봐서도 그렇고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적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이렇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더 잘 해 주자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게 우리가 했던 과거 정도로는 회귀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기한에 대한 연도를 이렇게 정해 놓는 선에서 일단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예를 들어 배를 보면 한진해운이 머스크라든지 외국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부도를 냈으므로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나 이런 데는 그때 국민주로 다 돈을 받아서 국민들이 더 잘살게 됐지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잘 참조를 해서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우선 이것은 보류하는 걸

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91쪽입니다.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3건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에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서영교 의원안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이고, 정부안은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다가 취득세를 곱하는 것이었는데 정부안에서는 교환자동차에 부과될 세액에서 종전자동차 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환자동차와 종전자동차의 가액 차이가 소액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경형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 전기차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3년 주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95쪽입니다.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고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한도를 상향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

입니다.

전주혜 의원안은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한도를 폐지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하며 정부 제출안은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율이 4%이므로 현재 감면한도 50만 원 하에서는 취득가액 125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정부안과 같이 한도를 65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1625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이고 전주혜 의원안에 따르면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전액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근 2000만 원 이상의 경형 승용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감면 한도를 넘어서는 경형자동차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감면 한도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그리고 또 경형차 위주로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경형차에 대한 구입 또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 1호 모델로 GGM,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금년 10월에 첫 차가 출시됐잖아요, 캐스퍼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로 23년 만에 대한민국에 상용자동차 제조공장이 들어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다시 리쇼어링하든지 또 유턴하든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

액으로 얼마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해 줄 게 아니고 지금 전주혜 의원께서는 전액을 다 감면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경형차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의 경형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가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캐스퍼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소형차, 경차보다 조금 더 큰 차의 경우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선이 돼서……

○이형석 위원 2000만 원 이하의 경형차 이렇게 딱 해 버리자 그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나 하면 한 2000만 원 밑의 경형차인 경우까지 하면 결국은 위원님께서 취득세를 0원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이신데 그러면 cc가 조금 높다고 그래서 그것보다 한 등급 위인 경형차가 아닌, 차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반떼 정도 있다 그러면 아반떼도 194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36만 원을 내야 되고 2000만 원인 캐스퍼는 0원을 내고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도 설계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석 위원 경형차의 기준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일단 cc가 1000cc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이형석 위원 1000cc 미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cc는 1000cc가 넘는데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의 차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그런 차들이 지금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격대가 1900만 원짜리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제 감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대충

한 2000만 원이라 치면 136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데 동일한 2000만 원의 가격대인 것은 경형차라 그래서 취득세를 0원으로 내는 게 합리적인 구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형석 위원 그것보다는 경형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당초에 도입했던 취지를 살리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정부안에 낸 게 원래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린 부분들이 소형 승용차 가격대, 그 마지막 제일 싼 소형 자동차 밑에서는 다 취득세가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 숫자로 설계했거든요.

○이형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인 선을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선 결정하지 말고.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결정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한테 자동차산업 쪽, 산자부에 의논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98쪽입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이영 의원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3년 연장하고 정부 제출안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경우에 중고차 및 수출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되거나 수출 활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01쪽입니다.

301쪽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50%를 신설하는 안이고,

정부 제출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이 대중교통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서민의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 점이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비해 저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와 택시, 천연가스버스,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05쪽입니다.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재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2019년 심사시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종료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도 종료를 검토하였으나 별정우체국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이 연장된 바 있고 2019년 결산 기준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액은 총 3억 9000만 원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3000만 원인데 현재 별정우체국이 전국 729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폐지에 따른 부담액이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을 위한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안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361억 8000입니다.

2018년도 심사 당시 교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장기간 사용·수익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1년부터 지방세 특례가 축소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등에 대한 제공이 공익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감면 규정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기간 연장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11쪽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에 민간 방식과는 달리 사업시행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취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주택을 준공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종전 대비 초과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의 50~75%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도 3080+에 따라서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와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는 달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이 중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을 건축하는 때에 그리고 주택을 분양하는 때에 각각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민간 추진 방식에 비해 더욱 무거운 세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 보상은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감면 대상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법에서도 건축물에 부속 토지가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에 부속 토지 포함 명확하게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부속 토지까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16쪽입니다.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4건의 개정안이 있는데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승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안은 현재 감면지역인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서영교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4년 연장 그리고 권명호 의원안과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위기지역 중 고용재난지역은 선포 사례가 없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해남,

거제·통영 등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감면 특례가 처음 시행된 2019년에는 감면 실적이 없는데 사업전환 승인이 주로 기존의 영위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유지 또는 축소하고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업종 추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등 부동산 신규 취득의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의 현 상황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고용안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3년 주기인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병도 의원안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정주요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이고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세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들을 적극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21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환공여구역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둬으로써 지방세 특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반환공여구역 등의 경제적 쇠퇴 및 낙후도가 모두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차관님, 반환공여구역 이쪽은 사실 인구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이 전국의 한 90%가 경기도에 있고 그중에 한 80%가 경기북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이 인구 과밀억제권역으로 일부 거기에 묶여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여구역…… 여기에 보면 정반대로 해 놔서, 북부 지역이 더 열악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감면 혜택 같은 것이 주어지면 지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지역들이 공동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억제권역이 경기북부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또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남부 지역이 풀리면 또 다른 심각한 과열 현상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김민철 위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옮기려고 해도 남부에 비하면 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한 8 대 2 정도 되니까. 그런데 남부에 하나가 더 생길까 봐 북부 지역에 그 많은 것을 더 피해 보라고 하는 게, 더 피해 보는 거지요. 그 하나를 감안해서라도 북부 지역에 공여구역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을 지역별로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 또 북부 지역의 지자체들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또 다른 우려 부분이 있

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려해서……

○**김민철 위원** 공여구역법에서도 그것 면제해주자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법하고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이것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으로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도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국가가.

○**김민철 위원** 지방보다 못하니까, 북부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져서……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2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 의원안과 김기현 의원안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은 취득세 100% 그다음 3년간은 각각 50%를 감면하는 안이고, 양향자 의원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당 안건들은 사실 대안 반영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의원안과 김기현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혜택은 다른 감면 혜택과 비교시 그 감면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조정식 의원안과 김기현 의원안에서 규정한 중점특화산업이나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이나 양향자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기업 등이 모두 산자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

다.

관련된 법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28쪽입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목적으로 사업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도 신탁토지에 대해 감면 적용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담보신탁을 위해서 신탁사에 사업대상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1항의 적용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지방세 감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담보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도 감면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별도의 개정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31쪽입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확대에 관한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김교홍 의원안과 구자근 의원안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 대상 확대,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구자근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김교홍 의원안은 재활용 중소기업 조합이 취득한 재활용 용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이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김교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출자하여 납부한 토지에 대해서 향후 그 토지로 취득한 산업시설용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이중납부에 해당하여 조합 납부분만큼을 공제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취득세는 각각의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세 납부 주체도 조합과 개별 조합원으로 별개의 주체인 점,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38쪽입니다.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의 추정 요건에 대한 완화 사항입니다.

산업용 건축물 임대에 대한 추정 배제에 관한 진성준 의원안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정부 제출안은 산업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혼재된 용어를 산업용 건축물로 통일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산업용 건축물의 임대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추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 규정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과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산업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이해되는바 정부안과 같이 용어를 통일한다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정 요건 완화에 관해서는 추정 요건 중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서범수 의원안과 김민철 의원안에서는 모두 5년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의 추정 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의 추정 산업단지 등의 신축과 증축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추정 요건의 완화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단지 등 외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 차관님, 지금 부지를 취득했다라고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 19년도에 취득을 하면 20년도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못 한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기간에 못 했으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회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1년 내 감면을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에……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사업이 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도 3배인 3년 동안은 봐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과연 코로나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고 다 저기 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아니, 그 문

제가 아니고요, 3년 동안 뭐라도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년이라고 해도 5년을 다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3년째까지 되는데 거기서 2년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코로나 기간에 시설 투자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 못 했던 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건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이것을 5년으로 해 본 적이 없어서 현장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음 논의 때 한번……

○**김민철 위원** 코로나 때문인데 판단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렇게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추정요건이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5년 동안……

○**김민철 위원**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제가 좋아서 매입을 해서 시설 투자하고 가는데 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업종별로 다르고 케이스별로 다 다른데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모조리 추정 요건을 연장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민철 위원** 이게 전체 얼마나 돼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추계를 좀 해 보고요. 보류했다가 다음번 논의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이것은 추계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지요.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지금 재난적 상황으로 다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모든 산업 현장 또 우리 기업들, 자영업자·소상공인, 다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이런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산업단지에 입주를 촉진시키고 또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민철 위원** 2년밖에 안 돼요.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민철 위원** 다른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산업단지의 용도에 맞게 입주시설들이 들어와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체의 행위 자체를 안 하고 기다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추정을 연장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준을 잡아 보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지역 의견도 좀 더 들어 보고 다음번 논의 때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내일모레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 보고 또 그런 안도 이야기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 본회의가 연기가 돼서 모레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한 6시까지 하고 내일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45쪽입니다.

345쪽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목별·성격별로 상이하던 감면 요건을 통일하여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서 서영교 의원안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 구자근 의원안은 공

장의 지방세 감면을 4년 연장 그리고 정부안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몰기한 연장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감면 대상이 법인·공장인지 및 세목에 따라 상이하여 혼선을 유발하던 감면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서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감면 요건이 달리 설정되어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의미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산업단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도시의 정의에는 산업단지가 제외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해 이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단지 내부 법인의 지방 이전 촉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51쪽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으로 구자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일몰기

한은 202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세 감면의 기간이 현행법상의 다른 재산세 감면 규정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특례 부여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 기업들의 조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니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54쪽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 이주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 이주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7000만 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5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량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으로서 일몰기한 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59쪽,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362쪽, 69번은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행사 등이 불가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49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일몰기한 연장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64쪽,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하영제 의원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에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2030년까지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면 빈집의 철거를 활성화하고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철거 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 각 법률에서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나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빈집 철거 시 6개월간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건축물 공사 착수 시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67쪽입니다.

367쪽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적용되던 감면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연맹 활동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다시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자유총연맹의 수행사업이 지방사무와 연관성이 낮고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14년에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제외한 국민운동을 추진 중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목적세적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정비하는 추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연간 100억 원 내외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나 특별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20억 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매우 부담이 크다는 입장으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국민운동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의 국비 지원이 매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얼마……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20년에 공익 사업 지원으로 4억 지원했습니다.

○**이형석 위원** 4억이에요?

지금 별도의 자유총연맹 수입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일단 주차장 운영 수익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형석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담세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어서 어떤 담세력이 충분한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주차장 운영 수익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KPS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배당금이 20억 정도 됩니다.

○**이형석 위원** KTX?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KPS, 한전산업개발이라고……

○**이형석 위원** 그런데 연간 예산이 100억 규모로 운영이 되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예.

○**소위원장 박재호**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이런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주는 감면 혜택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거지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중** 이게 새마을운동중앙회·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이렇게 같은 세트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그런데 14년도 그때 제도를 정비하면서 당시에 논의한 속기록을 보면 첫 번째 명분은 차관이 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을 해 주느냐 마느냐의 원칙이 자치사무화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새마을운동은 옛날부터 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일을 많이 해 왔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연관성이 높고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정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런 이유로 조금 낮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된 것으로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유총연맹의 하부 조직들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죽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활동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거는 사실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단위에 보시면 국민운동 3단체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하는 업무, 하는 기능도 사실상 대동소이하지요.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 보면 주로 공익사업·캠페인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총의 재산이 있는 곳이 아마 도시계획상으로 공익 목적에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주로 주차사업 정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컨벤션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인정이 됩니다.

논의해 주시면……

○**이형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건물입니까, 거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주로 건물이지요. 건물하고 토지인데……

○**최춘식 위원** 토지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거지요? 직접 고유업무를……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토지는 부속 토지입니다.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도 한 번 더 좀 검토해서 다른……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기관도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래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70쪽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전자송달을 하거나 자동이체를 하거나 한 건만 할 경우에는 250원에서 80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

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안에서 규정한 공제 금액은 현행 대비 약 60%가 인상된 수준인데 현행 공제액은 2010년에 공포된 법률에서부터 적용되어 왔던 금액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인상하여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74쪽입니다.

374쪽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경만 의원안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흔히 말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 수령을 할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소득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 가입 후 단기간 내에 폐업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이 이자액보다 많아서 공제금 실수령액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되어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67조의2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에 그 공제·감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자동 부과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조세법 개정과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박재호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시 40분인데 오늘 이 정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원래 9시 반부터 소위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 9시 반부터 해서 오전에 가능하면 마치고 안 되면 오후에 2시부터 1시간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하면 모레는 또 우리가 중점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 하여튼 나머지 법안은 좀 빨리 마치는 걸로 하고 의견이 있으신 거는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 법안심사를……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하나 좀 놓친 게 있는데요.

차관님, 4-1 22쪽인가요?

○소위원장 박재호 몇 쪽입니까?

○최춘식 위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이거 하나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 다뤘거든요, 12월 달에. 이거 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년을 연장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9명의 의원들이 전부 50%를 그대로 감면해 주자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 25%로 지금 안을 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5%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금융기관이 융자 담보물 등기 시에 비용을 이제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업인에게 비용 부담,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 부분이 고려가 돼서 저희가 좀 감면 혜택을 반으로 줄이는 안을 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작년에 거론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비교한다면 발생 환자 수가 작년에 보니까 하루 평균 256명이었네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11월 달에 2500명인데 수치상으로 본다면 상황 개선이 안 됐거

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감면을 1년을 연장해 줬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의원님들 안이 2023년까지 또는 26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론한다는 의미에서 1년 정도를 더 연장을 시켜 놓고 한번 거론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저희가……

○최춘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연장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원래 정부안은 일몰 종료였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원래 농협이 내야 되는 돈이지만 혹시 농민들에게 전가될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1년만 더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고 올해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등록면허세는 원래 다 일몰종료가 원칙인데 여기는 농민하고 조금이라도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협에 대해서 25% 그래도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농촌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아홉 분의 의원들이 똑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법안은 의결이 안 끝났으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예, 한 번 더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관님,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는 기회를 가져서……

○최춘식 위원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소위원장 박재호 이해식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차관님, 아까 지방세 총수입의 약 13.8%를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분모가, 지방세 총세입 플러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액 분에 비과세 감면액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글썄,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세 총액 플러스 비과세액 분에 감면액 그렇게 따지니까.

○이해식 위원 그래서 그게 13.8%다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감면 한도.

○이해식 위원 그게 행안부가 설정하고 있는 한도 그런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재정법에 나와 있고요.

○이해식 위원 국가재정법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니, 지방재정법에.

○이해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가도 마찬가지로요.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이제 감면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고요. 직전 3개 연도 평균 비과세 감면율과 거기에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플러스 0.5% 해서 그 감면 한도를 지켜라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한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세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비율이 국세가 저희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해식 위원 높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14%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9시 반에 법안 심사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백혜련
이명수	이영	이해식	이형석
최준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규창		
지방세정책관	이우중		
경수기획조정관	우철문		